

## 《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》

### 1. 2015년 자체평가 결과

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1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, 해당 자체평가 결과,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“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”에 적합함.

### 2.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

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“제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”에 따라 실시한 2015년 자체평가의 평가영역별(1.단위) 결과는 다음과 같음.

평가영역	평가결과		비 고
	적 합	부적합	
1. 학 생	○		
2. 교 원	○		
3. 교육과정	○		
4. 교육환경	○		
5. 교육성과	○		

\* 해당하는 칸에 “○”로 표시함.

### 3.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

2015년 자체평가 결과,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지표는 없음.